

지식재산권과 발명 특허제도

가. 21세기 사회와 지식재산권

김두선(한국학교발명협회장)은 한국학교발명협회가 발간하는 “발명교육정보” 논단에 실린 <IMF 체제 속의 우리경제와 발명교육>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식산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산업선진국들의 구호중의 하나가 1,000명의 박사보다 빌게이즈 같은 한사람의 발명영재를 발굴하라는 것이다. 약관 40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빌게이즈의 재산은 390억불(97, 6월 말 현재)이라고 프랑스 브보스지가 발표한 바 있다. 1년 동안에 2배의 재산이 불어났으며, 지금도 1주일에 평균 4억불씩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존 자원 하나 없는 우리의 살길은 머리와 손재주에 의존하는 창조적 두뇌 개발 및 기술개발로 부가가치 높은 1등 상품을 통해 무역흑자를 높이는 데에 전력을 집중하는 길만이 경제회생의 최선책이라 하겠다. 산업경쟁은 곧 기술경쟁이며, 기술경쟁은 지식정보 경쟁이요, 지식정보경쟁은 바로 인간 자원경쟁이며, 인간 자원경쟁은 교육경쟁이다. 이제 우리는 남들이 흉내 내지 못하는 부가가치 높은 세계특허의 획득으로서 로열티를 바치는 국가에서 로열티를 받는 국가로 변신을 해야겠다. 우리 앞에 당면한 IMF의 난제 해결과 더불어 동시에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국제무역보호 기구인 WTO와 OECD 등의 선진산업국들과의 대등한 조건선상에서의 경쟁력 제고문제 등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값진 산업이 바로 “지식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2년이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등장하고 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전개될 것이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의 비교 기준이 과거의 부존자원이나 경제규모 등에서 기술력 정신력으로 바뀌어지고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교역의 핵심 수단이 되어 국제 경쟁력을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나.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념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재산권을 총칭하여 지식재산권이라 하며, 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이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에 관련되는 저작권으로 대별되며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에 대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로서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유체 재산권과는 달리 형태가 없다는 뜻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은 발명을 하여 특허를 얻은 자와 실용신안을 고안한 자 그리고 의장을 창작한 자가 발명 고안 및 창작의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그 발명이나 고안 및 창작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척도이다. 또한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자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 줌으로써, 신용유지를 통한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시키는 제도이다.

한편, 저작권은 문화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 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정신의 객관적 실재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신지식재산권은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 집적회로, 식물 신품종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정보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재산권이다.

이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별항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다. 산업재산권의 요건과 권리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공개한 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보상제도로써 그 목적은 첫째, 발명자에게 발명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을 보호하고 둘째, 일반인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회(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특허권자의 허락 하에서,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자유롭게)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특허의 요건과 권리

특허제도는 궁극의 목적이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의 특허출원시에 동일 내용의 기술이 이미 공지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쉽게 창작해 낼 수 있는 발명이 아닌 기술상의 진보가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그 발명이 산업분야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은 거절사정을 받게 되며, 설사 실수로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발명의 정의에 부합되고,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특허요건을 갖추어도 원자핵 변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 발명 등 불특허사유에 해당되는 발명과 국방상, 공익상 국가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허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허권은 특허의 권리자만이 그 특허권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일체의 독점권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 특허에 관계되는 물건 또는 방법 등을 사업으로써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출원 공고일로부터 15년간 권리가 존속하되, 출원 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특허권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시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나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출원당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그리고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 제조한 발명 및 방법 등에는 제한되어 특허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또한 특허발명을 3년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국내수요가 충분치 못할 때, 그리고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실시권을 강제로 타인에게 허락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2) 실용신안의 요건과 권리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종전에 특허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세가지였으나, '98년 9월 23일 실용신안법의 제정으로 '99년 7월 1일 부터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제적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지적사항에 대한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등록될 수 있도록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마련되

었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자만이 그 실용신안권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일체의 독점권을 말하며, 그 존속기간은 실용신안 출원공고일로부터 10년간이다. 이외에 권리의 효력면에서는 특허제도 와 마찬가지로이다.

3) 의장의 요건과 권리

의장이란 일반적으로 디자인(desine) 또는 산업 디자인이라고 한다. 의장법에서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을 말하며 물품의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색의 구분을 말하고 색채란 색의 흐름 등을 물품의 색채란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심미감은 당해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끼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의장의 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조성 등의 세가지이다. 그러나 의장의 정의나 등록 요건을 구비하였어도,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의장권자는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의장권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위한 의장고안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의 경우에는 제한되어 의장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실시권에 의

한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약정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질권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특허권과 동일하다.

4) 상표의 요건과 권리

상표란 일반적으로 상품의 이름으로 광의로는 상품과 서비스업 등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표의로서의 이름이며, 협의로는 상표법에 따라 출원등록을 함으로써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마크(MARK)를 말한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며, 다만, 색채는 상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을 말한다. 따라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다.

상표는 구성이 명료하고 일반인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품의 보통 명칭, 관용 상표, 상품의 품질 원재료 표시 등 성질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그리고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어서 등록요건을 갖추었어도 국가의 공익적인 견지에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즉 국기, 국장,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국가, 민족, 고인 등을 비방 악평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가, 공공기관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포함 하는 상표, 선출원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상표권 소멸일로부터 1년 이내 타인이 출원한 경우, 저명상표,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등은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은 무체재산권으로써 상표권자가 지정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독점사용하는 권리로서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자기의 성명, 상호나 명칭, 그리고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 품질표시 등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실시권, 타인의 의장권과 저작권과의 저촉, 채속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 주요 농작물 검사증, 종표 품질표시, 상표권의 공유 담보 등의 경우는 효력이 제한된다.

발특2000·11

